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8. 1. 19. 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1월 9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(개정안 제2조)

1) 지방공무원 총수: 3,135명 → 3,175명 (40명 증원)

○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개정안 제4조, 별표3)

1) 일반직공무원: 2,883명 → 2,903명 (5급 이하 20명 증원)

2) 교육전문직원: 236명 → 256명 (5급상당 이하 20명 증원)

## 5. 검토의견

- 본조례 개정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,
- 학교폭력예방, 교원치유지원센터, 마음건강지원센터, 다문화지원 센터 지원 등 지역현안 및 교육행정 수요에 의해 일반직공무원 20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20명 등 총 40명 증원으로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,175명이며, 이는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인 3,183명 범위 내의 정원책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